

●領海및接續水域法<sup>(1977·12·31)</sup>  
法律第3037號

改正 1995·12·6 法律第4986號

第1條 (領海의 범위) 大韓民國의 領海는 基線으로부터 測定하여 그 外側 12海里의 線까지에 이르는 水域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水域에 있어서는 12海里이내에서 領海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第2條 (基線) ①領海의 幅을 測定하기 위한 通常의 基線은 大韓民國이 公式적으로 인정한 大縮尺海圖에 표시된 海岸의 低潮線으로 한다.

②地理的 特殊事情이 있는 水域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點을 連結하는 直線을 基線으로 할 수 있다.

第3條 (內水) 領海의 幅을 測定하기 위한 基線으로부터 陸地側에 있는 水域은 內水로 한다.

第3條의2 (接續水域의 범위) 大韓民國의 接續水域은 基線으로부터 測定하여 그 外側 24海里의 線까지에 이르는 水域에서 大韓民國의 領海를 제외한 水域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水域에 있어서는 基線으로부터 24海里이내에서 接續水域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6]

第4條 (隣接 또는 對向國과의 境界線) 大韓民國과 인접하거나 對向하고 있는 國家와의 領海 및 接續水域의 境界線은 關係國과의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 兩國이 각기 領海의 幅을 測定하는 基線上의 가장 가까운 地點으로부터 같은 距離에 있는 모든 點을 連結하는 中間線으로 한다. <改正 95·12·6>

第5條 (外國船舶의 通航) ①外國船舶은 大韓民國의 平和·公共秩序 또는 安全保障을 害치지 아니하는 限 大韓民國의 領海를 無害通航할 수 있다. 外國의 軍艦 또는 非商業用政府船舶이 領海를 通航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當局에 事前通告하여야 한다.

②外國船舶이 그 通航時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의 平和·公共秩序 또는 安全保障을 害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第2號 내지 第5號·第11號 및 第13號의 行爲로서 關係當局의 許可·承認 또는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韓民國의 主權·領土保全 또는 獨立에 대한 여하한 힘의 威脅이나 행사 기타 國際聯合憲章에 具現된 國際法原則을 違反한 방법으로 행하는 여하한 힘의 威脅이나 행사
2. 武器를 사용하여 행하는 訓練 또는 練習
3. 航空機의 離艦·着艦 또는 塔載
4. 軍事機器의 發進·着艦 또는 塔載
5. 潛水航行
6.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에 有害한 情報의 蒐集
7.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에 有害한 宣傳·煽動
8. 大韓民國의 關稅·財政·出入國管理 또는 保健·衛生法規에 違反되는 物品이나 通貨의 揚·積荷 또는 사람의 乘·下船
9.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汚染物質의 排出
10. 漁 撈
11. 調查 또는 測量
12. 大韓民國 通信體制의 妨害 또는 設備 및 施設物의 毀損
13. 通航과 직접 관련없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③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水域을 정하여 外國船舶의 無害通航을 一時的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第6條 (停船等) 外國船舶(外國의 軍艦 및 非商業用政府船舶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第5條의 規定을 違反한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當局은 停船·檢索·拿捕 기타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6條의2 (接續水域에서의 關係當局의 權限) 大韓民國의 接續水域에서 關係當局은 다음 各號의 目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의 領土 또는 領海에서 關稅·財政·出入國管理 또는 保健·衛生에 관한 大韓民國의 法規를 위반하는 行爲의 방지
2. 大韓民國의 領土 또는 領海에서 關稅·財政·出入國管理 또는 保健·衛生에 관한 大韓民國의 法規를 위반한 行爲의 制裁

[本條新設 95·12·6]

第7條 (罰則) ①第5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한 外國船舶의 乘務員 기타 乘船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情狀이 重한 때에는 當해 船舶·器材·採捕物 기타 違反物品을 沒收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②第6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이나 措置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外國船舶의 乘務員 기타 乘船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④이 條의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法 이외의 다른 法律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第8條 (軍艦등에 대한 特例) 外國의 軍艦이나 非商業用政府船舶 또는 그 乘務員 기타 乘船者가 이 法이나 기타 다른 法令을 違反한 때에는 이의 是正이나 領海로부터의 退去를 要求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4月이내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1978·4·29 大統領令 제8994호에 의하여 1978·4·30부터 시행]

附 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1年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1996·7·31 大統領令 제15133호에 의하여 1996·8·1부터 시행]